

**기준일 설정 공고**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12일 현재  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06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, 9층  
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동 택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